



제 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의 금지 등 〉

■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6346호)

2024.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4. 1. 23.

다. 회 부 일: 2024. 1.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특정 명령을 정보통신망에 자동·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하 “매크로 프로그램”¹⁾)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3(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1) 매크로(macro) 프로그램이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대량의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함.

<신 설>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 검토의견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공연이나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입장권 등을 다량으로 구매한 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얹어 되파는 방식의 암표 매매가 성행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²⁾

현재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³⁾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나 처벌의 수준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가벼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에서 매매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온라인에서의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법 규정이 없음. 그

2) 문화일보, “‘매크로’ 돌려 수십배 폭리…예매 못한 전팬, 울며 겨자먹기 구매”, 2024.1.24.. 국민일보, ““16만원 임영웅표 100만원에”...가요계 온라인 암표 골머리”, 2024.1.8. 파이낸셜뉴스, ““폐이커 경기 300만원에 판다”..월드컵 결승전 암표 “부르는 게 값””, 2023.11.15. 등 기사 참조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압표 매매는 티켓 판매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⁴⁾의 적용만이 가능한 실정임.

한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처벌하는 규정⁵⁾이 2023. 3. 21. 「공연법」에 도입되어 2024. 3. 22.부터 시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처벌하는 규정⁶⁾이 2023. 8.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입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임. 그러나 이스포츠 등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규정이 도입되지 않고 있음.⁷⁾

4)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5)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이용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⁸⁾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처벌⁹⁾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경범죄 처벌법」 등 현행 법체계로 규율하기에 불충분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압포 매매에 대하여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연이나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와 같이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등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은 ①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하고 ② 이를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겠다는 취지이나, 개정안의 문구에 따르면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¹⁰⁾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정안의 문구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입한 입장권등’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7) 참고로, ‘운동경기 입장권’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853호)이 함께 심사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의결되었고, 해당 대안이 2024. 2. 29.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 .9. 27. 시행 예정에 있음.

8)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판매’는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9)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연법」 등 다른 입법례와 동일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개정안은 현행 「공연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①의 구입행위와 ②의 판매행위가 모두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①의 행위로 인해 입장권 등 구매의 정당한 기회를 잃은 일반 구매자들의 피해와 ②의 행위 중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온라인상 부정판매 및 그로 인한 거래질서 훼손 등 문제점을 고려할 때, ①의 행위와 ②의 행위 각각에 대하여 금지·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수 계류 중인바, 이 중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려는 개정안(정경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100504호)과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및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행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개정안(윤한홍의원안 및 양정숙의원안, 의안번호 제2100419호 및 제2110810호) 등이 포함되어 있음.

문 의 처

02)6788-5376
